

평창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0년 9월 30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1. 심 사 경 과

- 가. 제출일자및제출자 : 2000. 9 . 21 평창군수(도시경제과장)
- 나. 회부일자 : 2000. 9. 29
- 다. 상정일자 : 제79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제1차조례특위(2000.9.29)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가. 제 안 이 유

- 국민의 41%가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시설로 생활용수를 충당하고 있음.
- 따라서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의 점검 및 수질검사 강화 운영관리등의 규정신설과 개정을 통한 운영·관리체계를 개선하고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함에 있음

나. 주 요 골 자

- 제명변경 : 평창군간이상수도 관리조례 ⇒ 평창군간이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이하 “간이급수시설”이라 한다)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 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정비계획을 수립토록함(안 제3조)

-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수질검사 및 시설점검을 분기 1회이상 실시토록 의무화함(안 제6조 및 제7조)
- 간이급수시설의 응급복구 및 비상급수 계획을 수립하여 비상사태의 사전대비(안 제10조)
- 간이급수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 부담원칙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내에서 일부 비용지원 가능(안 제14조)
- 군수는 간이급수시설의 유지 및 운영·관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안 제2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박태영)

- 본 조례는 수도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되는 조례로서
- 그간 수도법 제32조제9호의 규정에 정한 일부규모의 수도와 또 이와 비슷한 규모의 수도로서 군수가 지정한 수도만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평창군 간이상수도 관리조례를 확대하여 수도법 제13조 제13호 2항에 규정한 주민이 공동으로 설치·관리하는 일정규모(100인미만 또는 1일 공급량 20세제곱미터미만의 급수 시설까지 포함시켜 원활히 운영·관리코자 하는 것임.
- 급수인구의 40%이상 주민이 사용하는 간이상수도 및 급수시설을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아짐.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8. 기타필요한 사항 : 없 음

붙 임 : 평창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 10부